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의 정관 제2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2026년 3월 27일(금) 오전 9시
-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공원로4길 27,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판교유스센터)
- 회의목적
  -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26기(2025.01.01.~2025.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이익배당예정: 1주당 현금배당금 700원(비과세배당 1주당 570원 포함))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지1. 참조)
      - 제2-1호 의안: 배당절차 개선(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
      - 제2-2호 의안: 전자증권법 등 반영
      - 제2-3호 의안: 독립이사 명칭 도입 등 개정 상법 반영
      - 제2-4호 의안: 기타 일부 조항 변경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재선임) (※별지2. 참조)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김난희 선임의 건(재선임)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연보흠 선임의 건(재선임)
    -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권진홍 선임의 건 (분리선출) (※별지3. 참조)
    - 제5호 의안: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자기주식 감자 소각(자본금 감소)의 건 (※별지4. 참조)
    - 제7호 의안: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제8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님들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 안내 사항]**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수여기간: 2026.03.17.(화) ~ 26.(목) (10일간)  
- 개시일 오전 9시부터 종료일 오후 5시까지 (개시일/종료일 이외,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인증서를 통해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2026년 3월 3일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태영

별지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정관 신규조문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 15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배당절차 개선(주주의 배당에 추가가능성 제고)
<신설>	제 18 조의 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 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등 반영
제 34 조(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8 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4 조(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8 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 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립이사 명칭 도입 등 개정 상법 반영
제 40 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독립이사 명칭 도입 등 개정 상법 반영
제 40 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0 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독립이사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립이사 명칭 도입 등 개정 상법 반영
제 47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 3 항·제 4 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 주식을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 47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 3 항·제 4 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 주식을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독립이사 명칭 도입 등 개정 상법 반영

개정전	개정후	비고
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7 조의 2(감사위원의 분리 선임·해임) ① 제 47 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 47 조의 2(감사위원의 분리 선임·해임) ① 제 47 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독립이사 명칭 도입 등 개정 상법 반영
제 54 조(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영업년도 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제 54 조(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기타 일부 조항 변경
제 55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5 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절차 개선(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
제 56 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의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6 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개월, 6 개월 및 9 개월 경과 후 45 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 1 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배당절차 개선(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
<신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 년 3 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2 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 34 조, 제 40 조의 2, 제 47 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 20991 호, 2025. 7. 22.> 부칙 제 2 조 단서에 따라 2027 년 7 월 22 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감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 47 조 제 5 항의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일부 조항 변경

**별지 2.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재선임)**

[사내이사 후보자 세부사항]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난희	1975.02.26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발행회사 임원	이사회
연보흠	1972.09.14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발행회사 임원	이사회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최근 10년간)		해당법인과 최근3년간 거래 내역
		기간	내용	
김난희	現) (주)웹젠 경영지원본부장	2014~현재	(주)웹젠 경영지원본부장	해당사항 없음
		2012~2014	(주)웹젠 경영지원실장	
		2010~2012	(주)웹젠 경영기획실장	
연보흠	現) (주)웹젠 기술위원장	2022~현재	(주)웹젠 기술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2019~2022	(주)웹젠 기술연구소장	
		2016~2019	(주)웹젠 기술본부장	
		2012~2016	(주)웹젠 퍼블리싱기술실장	

후보자 성명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유무
김난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연보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별지 3.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권진홍 선임의 건 (분리선출)**

[후보자 세부사항]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권진홍	1972.05.28	사외이사 후보자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최근 10년간)		해당법인과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권진홍	변호사	2001~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후보자 성명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유무
권진홍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별지 4. 자기주식 감자 소각(자본금 감소)의 건**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자기주식소각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주식수	감소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보통주	3,634,309주	10.50%	2026.04.30	17,655,442,000원 (34,600,884주)	15,838,287,500원 (30,966,575주)

(주1) 상기 감소비율은 감자전 총 발행주식총수 34,600,884주에 대한 감자주식수 비율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1) 감자 대상 주식 내역

: 상기 감자소각 대상 주식은 과거 당사의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임.

(2) 감자 방법

: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중 일부인 3,634,309주에 대해서만 임의/무상 소각할 예정임에 따라,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없음.

(3)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일정 포함) 및 자본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함.

# 주주총회 위임장

본인은 2026년 3월 27일(금)에 개최하는 ㈜웹젠의 제26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웹젠이 지정하는 오윤희/윤새롬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임합니다.

- 다 음 -

## 1. 의결권 위임 세부 내용

주주 번호:		의결권 있는 주식 수:	주
소유 주식 수:	주	의결권 위임할 주식 수:	주

## 2.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찬반 여부 (○표 혹은 √표)

구분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제26기(2025.01.01.~2025.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이익배당예정: 1주당 현금배당금 700원(비과세배당 1주당 570원 포함))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배당절차 개선(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		
제2-2호 의안	전자증권법 등 반영		
제2-3호 의안	독립이사 명칭 도입 등 개정 상법 반영		
제2-4호 의안	기타 일부 조항 변경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재선임)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김난희 선임의 건(재선임)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연보흠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권진홍 선임의 건 (분리선출)		
제5호 의안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자기주식 감자 소각(자본금 감소)의 건		
제7호 의안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 3.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에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년       월       일       시

주식회사 웹젠 귀중